

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. 11. 30 선고 2021가단146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1. 30.

주 문

1. 가.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,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2.

26. 체결된 매매계약, 같은 목록 제2,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2.

19. 체결된 각 매매계약,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2. 9. 체결된 매매계약을
94,562,133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 A에게 84,803,966원, 원고 B에게 9,758,167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, 제257조(무변론판결)

판사 이정현

별지